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사전현 지실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보고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 리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 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신종 감염병백신검정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4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 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총계 “642”를 “649”로 하고, 일반직 계 “641”을 “64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22”를 “629”로 한다.

별표 3의 총계 “1,335”를 “1,337”로 하고, 일반직 계 “1,335”를 “1,33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22”를 “1,324”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36조의3제4항 관련)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존속기한: 2025년 9월 25일)

총계	2
일반직 계	2
4급 이하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u>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u>	제33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u>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u>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u>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u>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u>정원</u>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u>신종 감염병 백신검정과</u>) ① <u>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u>	<삭 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둔다.

②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종감염병 백신 국가출하승인 검토 및 승인

2. 신종감염병 백신 시험법 검토·확립, 국가표준품 확립 및 표준시험방법 개발

3. 신종감염병 백신 관련 국내·외 협력 총괄 등

④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42</u>	<u>649</u>	+7
·	·	·	
·	·	·	
일반직 계	<u>641</u>	<u>648</u>	+7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22</u>	<u>629</u>	+7
·	·	·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35</u>	<u>1,337</u>	+2
일반직 계	<u>1,335</u>	<u>1,337</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322</u>	<u>1,324</u>	+2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4